

# 주정·차위반 과태료처분 의견진술서

문의전화 : 053) 663-3021 ~ 6

팩스 : 053)663-5782

※ 의견진술신청은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, 기한이 경과 되면 부과 고지됩니다.

차량번호		차 종	
위반일시		위반장소	
진술인		연락처	
주소			
위반내용	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·정차 금지 규정 위반		

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진술 내용  (위반 사유 및 정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.)	
---	--

감경대상자 (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)	* 체납과태료 ( 무), * 공동소유자 ( 무) 본인은 과태료 감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『전자정부법』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[ ] 장애인증명서, [ ]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[ ] 한부모가족증명서, [ ] 국가유공자확인원, [ ] 주민등록 등·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진술인 (서명 또는 인)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※참고사항 :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16조 및 『도로교통법』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여 통고처분(범칙금 부과)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. 이 경우 사전납부자에 대한 20%의 감경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·정차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.

년 월 일  
진술인 (서명 또는 인)

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

접수일자 (접수번호)	의견요지	선결 (공 랐)		
		주무관	교통지도팀장	교통과장
20 . . ; ( )				

첨부서류 : 의견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